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유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27

발 의 년 월 일 :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 최유희 의원(1명)
찬 성 자 : 강석주,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ㆍ석, 서상열, 오금란, 유만희, 유정인, 윤영희,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정준호, 채수지, 최민규, 황철규 의원(24명)

1. 제안이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66㎡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하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 44㎡ 이상의 교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나 예외 규정이 없어, 학교 현장에서 시행령의 취지를 반영한 유연한 특수학급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

○ 서울 관내 학교의 특수학급 수용 여건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교실 면적 부족은 특수학급 확충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66㎡ 이상 교실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44㎡ 이상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66㎡ 이상의 여유 교실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44㎡ 이상의 교실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기준) ①·② (생 략) <신 설>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 관내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 66㎡ 이상의 여유 교실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44㎡ 이상의 교실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임

○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특수학급 설치가 가능한 교실의 규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특수학급 설치 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련부서(특수교육과 특수교육지원팀)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